

2000. 3. 21

제94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재 영)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2000. 5~7월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급변에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원(9급-5명)을 증원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 532명 → 537명 (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513명”을 “518명”으로 함

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표1】

- 정원의 총수 : 572명 → 577명 (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 558명 (5명 증)

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표2】

- 정원의 총수 : 551명 → 556명 (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532명 → 537명 (5명 증)

### 3.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社會福祉專門要員 擴大配置 指針」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5명의 신규채용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에 관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과 인원증원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동 규정 제1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동 규정 제21조 제2항).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동 규정 제22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동 규정 제23조의2).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社會福祉專門要員 擴大配置 指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것이고,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달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다음은 증원 인원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과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1항·제2항).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에 대비한 동별 배정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이 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던 보호대상자는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 등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기준 서구 생계비지급대상자가 2,132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는 5,591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급여수준은 종전 생계보호·의료보호·교육보호·장제보호 및 해산보호였으나 생계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주거급여·긴급급여 등을 신설하였고,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전반적으로 이들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행일이 2000년 10월 1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복지현실과 복지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복지행정의 수요증가, 지역간에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時宜性에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